



제337회 임시회

2015.01.28.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5년 01월 19일

○ 회부일자: 2015년 01월 20일

3. 제안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기관의 등급 조정(1개 기관)

기관명	구분	등급	시·군	구, 읍면동, 리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변경전	라	충주시	종민동
	변경후	“제외”		

나. 학교 폐지(1개 학교)

기관명	등급	시·군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단산고등학교	라	단양군	2015. 3. 1.	학생수 감소

다. 도로명 주소 표기에 따른 주소 변경(32개 기관)

1) 가등급 지역(1개 기관)

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영동학생야영장)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2) 나등급 지역(1개 학교)

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

3) 다등급 지역(4개 기관)

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제천학생야영장)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충북 단양군 단성면 선암계곡로 1092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충북 단양군 대강면 온천로 719-7

4) 라등급 지역(26개 기관)

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금관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강천초등학교	충북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	충북 충주시 양성면 학교말2길 50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충북 충주시 이류면 매현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화당초등학교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3
한송초등학교	한수면 송계리	충북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한송중학교	한수면 송계리	충북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세중초등학교	마로면 세중리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세중1길 2
회남초등학교	회남면 거교리	충북 보은군 회남면 회남로 1901-1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군북면 대정리	충북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3-2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동이면 우산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2길 23
용화초등학교	용화면 용화리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화양강로 32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문백면 은탄리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문백면 은탄리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문백면 은탄리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장연초등학교	장연면 오가리	충북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가5길 1
송면초등학교	청천면 송면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2길 13
송면중학교	청천면 이평리	충북 괴산군 청천면 문장로 2915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가곡면 대대리	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길 51
어상천초등학교	어상천면 임현리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단산중학교	어상천면 임현리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904
별방초등학교	영춘면 별방리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별방중학교	영춘면 별방리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영춘초등학교	영춘면 상리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평강로 63-6
영춘중학교	영춘면 상리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대가초등학교	적성면 대가리	충북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453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지정 하고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 기존에 특수지 ‘라’ 등급이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은 도로여건개선에 따라, “단산고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2015.3.1. 폐교됨에 따라 각각 특수지에서 제외¹⁾하며,
- 특수지 ‘가’ 등급인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영동학생야영장 등 32개 기관과 학교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 변경된 주소 표기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1) 특수지에서 제외될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특수지근무경력 가점(0.013점)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30,000원을 받을 수 없음.

관 계 법 령 발 체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② 제1항의 경우에 향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93.1.15., 1995.1.28., 2000.1.28., 2001.1.29., 2004.5.4., 2005.1.7., 2012.1.6.,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8.6.1., 2000.1.28., 2008.2.29., 2008.9.10.>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1.1.28., 1991.6.27., 2001.1.29., 2005.1.7., 2008.9.10.>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8.2.29., 2008.9.10.>